

소요되는 것이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기준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다.

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	가산율	
	현 행	개 선
(5) 호화 내·외장재 사용건물		
○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 ※ 외벽·내벽·바닥을 불문하고 1면이상이면 가산 하되 해당층만 가산	10/100	10/100
○ 특수유리로 외벽을 치장한 건물		
- 2면이하 또는 전체외벽의 50%이하	5/100	가산폐지
- 3면이상 또는 전체외벽의 50%초과	10/100	가산폐지

④ 감산율 적용기준의 명확화

단독주택중에서 감산율 적용대상 소형건물의 기준을 1개의 울타리내의 건물연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고 과세형평 유지토록 한 것이다.

현 행		개 선	
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	감산율	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	감산율
[단독주택]		[단독주택]	
(4) 연면적이 60㎡초과 85㎡이하	5/100	(4) 1구의 연면적이 60㎡초과 85㎡이하	5/100
(5) 연면적 60㎡이하	10/100	(5) 1구의 연면적 60㎡이하	10/100

⑤ 적 용 례(2001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65천원/㎡으로 정한 경우)

서울 서초구 소재 '93년 신축 APT 31평형 (101.03㎡) - 전용 75.66㎡, 공용 25.37㎡, 공시지가 75만원/㎡
